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3016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: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고광민, 김경훈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
김용오, 김원궁, 김원대, 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춘선, 서상열, 신복자, 오금란, 유만희, 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정준호, 최민규, 허 훈, 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.5%에 달해 초고 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 속에서 고령층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요 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0여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운영 되고 있으나, 최근 3년간 23개 기관이 출석부 허위 작성, 강사 및 직 원 미상주 등 교육의 핵심과 직결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교육 의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따라 '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'를 도입하여 요양보호 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, 양성 과정의 질을 높여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'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' 를 신설함(안 제2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등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 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8조의2(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등) ①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우수한 교육어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'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'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기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도록 한다.
 - 1. 교육에 적합한 기관의 시설환경
 - 2.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기관의 강사인력 현황
 - 3.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
 - 4. 연계된 실습기관의 환경 및 실습지도자의 역량 등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28조의2(좋은 요양보호사교육
		기관 인증 등) ① 시장은 전문
		인력 양성을 위하여 「노인복지
		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
		관 중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춘
		기관에 대하여 '서울형 좋은 요
		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'를 운
		<u>영할 수 있다.</u>
		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좋은
		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기준
		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도록 한
		<u>다.</u>
		1. 교육에 적합한 기관의 시설
		<u>환경</u>
		2.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
		위한 기관의 강사인력 현황
		3.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
		영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
		4. 연계된 실습기관의 환경 및
		실습지도자의 역량 등
		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
		<u>인정한 사항</u>
		③ 제1항에 따른 인증제 운영
		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

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취배상여부	판단 내용
제28조의2(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 등)	0	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시교육기관 안증제(지표개발 비용) 관련 비용 발생 ⇒ 총 42,470천원 소요(1차년도만 발생예상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○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 관련 비용(안 제28조의2)

나. 전제

- (지표개발)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지표 개발비(1차년도만 소요예상)
- o (인 중 서) 인증서1)는 서울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에서 제외함
- (미 고 려)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(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), 보조금 지급,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
-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○ 서울복지재단 문의내용2) 및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돌봄복지과)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총비용 = 총 42,470천원(1차년도만 발생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인증지표 개발 비용(안 제28조의2)	42,470	-	-	-	-	42,470
	소계(a)	42,470	-	-	-	-	42,470
수입	<u></u>	-	_	-	-	-	_
	소계(b)	-	-	-	-	-	-
	□총 비용(a-b)	42,470	-	-	-	-	42,470

^{1) [}서울시 유사사레 토대 추정] 서울시 유사사례 <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> 인증서 비용 20천원과 인증률(분야별 편차)을 바탕 으로 예상할 시 해당 사안의 경우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
[⇒] 이례적으로 170여개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전부 지원하여 인증된다고 하더라도 3,400천원 정도이며, 한해 동안 모든 기관이 지원하여 인증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^{2) [}전문기관 문의] 서울시 출연기관이자 복지 관련 전문기관인 서울복지재단에 통상적인 교육기관 평가지표 개발비용 문의결과 통상적으로 40,000~50,000천원 소요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함

4. 덧붙이는 의견

- [추계액 성격] 예시적·제안적 금액
 -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돌봄복지과)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3)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, 집행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례 및 전문기관 문의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 분석과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
- [추계액 활용유의]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
 -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사업의 형태, 운영방식, 규모, 대상 등 (다양한 지출결정요인)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하나의 예시로써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 승

2 02-2180-7953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. 비용요소
 - 서울형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 관련 비용(안 제28조의2)
- 2. 세부추계내역
- 가. 총비용 = **총** 42,470천원(1차년도만 발생예상)
- 나. 연평균 비용 = 42,470천원
 - = 인건비 × 용역개월수 + 운영비(제본비, 기타 일반운영비)
 - = 13,190천원4) × 3개월 + 2,900천원5)

^{3) [}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]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**능동적 입법조치**이나,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^{4) [}학술연구용역 원가산정기준 고려] 책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보수 월액합 등을 고려 13,190천원을 가정

⁵⁾ **[서울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수 고려**] 서울시 소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수(170여개)를 고려하여 제본수량 200여개 기준 2,000천원(10천원× 200부)으로 가정하고, 기타 운영비는 900천원(300천원 × 3개월)을 가정하였음